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03
----------	-----

2024. 6. 24.(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4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2024년 6월 11일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서성범)

가. 제안이유

○ 2024. 9. 1.자 학교 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 신설

명 칭	위 치	개교일자	설립사유
충북온라인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39	2024. 9. 1.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축으로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 본 조례 개정안의 별표 7 중 목도나루학교란 다음에 충북온라인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임.

충 북 온 라 인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39
---------------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1일 자 충북온라인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학교 간·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선택 따른 다양한 과목 수요 충족 한계 및 교사 정원 수급, 교원 업무 부담 가중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자 설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함
- 온라인학교는 청주남중 4층 유허 교실 11개에 사업비 35억 4,709만 원을 투입하여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학습 기회를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하여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설립의 필요성이 충분함

- 다만, 부지 변경에 따라 지연된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4. 9. 1. 개교와 리모델링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개교 후 올해 12월 청주남중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므로, 공사 기간 중 정상적인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하며, 2025년 개학 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청주남중 학생들의 학습공간과의 명확한 구획으로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민원 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목도나루학교란 다음에 충북온라인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충 북 온 라 인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39
---------------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7] 각종학교		[별표 7] 각종학교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신설>	<신설>	충북온라인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39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19.6.19.] [법률 제15950호, 2018.12.18. 일부개정]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2.3.] [법률 제16672호, 2019.12.3. 타법개정]

제20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